



금융거래지표에 대한 글로벌 규제개혁 동향과 국내 정책방향

2018. 5. 31.

거시금융실장 백인석
자본시장연구원

목 차

1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글로벌 규제개혁의 배경

2 금융거래지표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 및 추진경과

3 국내 정책방향

1

금융거래지표 규제개혁의 배경

금융거래지표에 대한 글로벌 규제개혁 배경

- '12년 LIBOR 조작사태 이후 주요국을 중심으로 '금융거래지표(지표금리, 금융벤치마크)'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개혁이 진행 중
 - LIBOR 등의 조작이 시장규율에 의존한 지표금리의 산출과 관리에서 비롯되었다는 문제의식 ➔ '시장 규율의 실패' · '공적 규율의 부재'
 - 금융거래지표 규제개혁의 목표는 지표의 신뢰도와 투명성 회복을 통한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➔ **금융거래지표의 산출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공적 규율을 강화**
-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규제개혁은 영국과 EU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, G20의 요청에 따라 FSB · IOSCO 등의 주관으로 **글로벌 공조가 강화**
 - IOSCO(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)가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핵심 원칙을 제시
 - FSB(금융안정위원회)의 주도로 주요국의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공적 규율 체계 마련 및 지표의 개선작업이 진행 중 ➔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

2

금융거래지표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 및 추진 경과

금융거래지표 규제개혁의 방향

- '13년부터 FSB-IOSCO의 주도하에 주요국을 중심으로 금융거래지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규제개혁이 진행 중

금융거래지표 (지표금리, 금융벤치마크) ▶ 예) 해외 LIBOR·EURIBOR 등; 국내 CD·코리보·코픽스 등

- 금융상품의 가격과 금융계약·금융상품의 손익에 지표(reference)가 되는 지수와 투자펀드의 성과 측정에 기초가 되는 지수 (EU 벤치마크법)
- 금융거래정보(또는 호가·평가액·추정치) 등(기초자료)을 이용하여 정해진 방법으로 산출되어서 금융거래의 교환금액, 가치 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 (국내 (가칭)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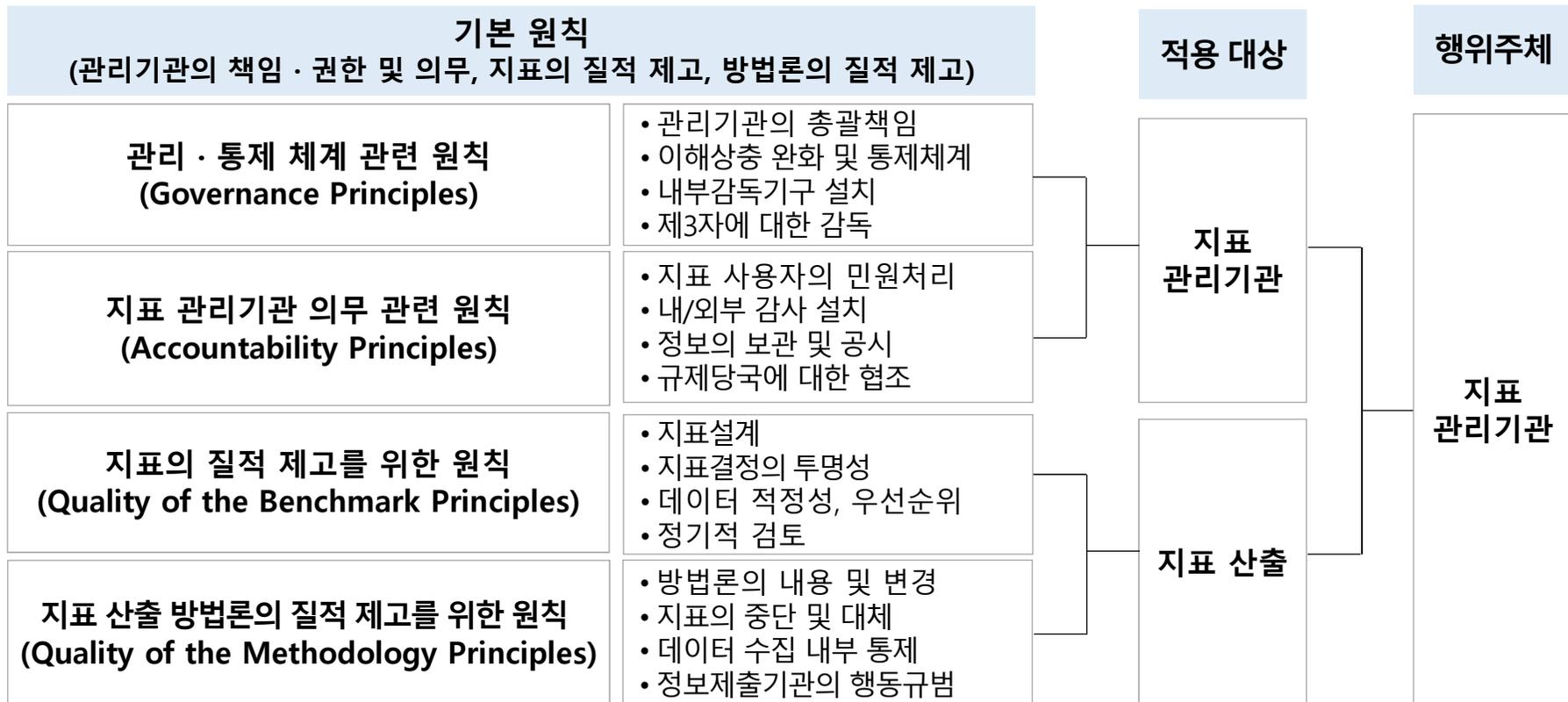
글로벌 금융거래지표 개혁 방향



금융거래지표에 관한 IOSCO 원칙

- IOSCO(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)는 '13.7월에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국제원칙을 제시
 - ➔ *IOSCO: Principles for Financial Benchmarks* (총 19개 항목)
 - ➔ **IOSCO 원칙은 글로벌 금융거래지표 규제개혁의 핵심 기준**으로 채택
 - ➔ IOSCO 회원국은 자국내 금융거래지표가 IOSCO 원칙에 부합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의무
 - *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금융거래지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
- IOSCO 원칙은 금융거래지표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지표관리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제시

IOSCO 금융거래지표에 관한 원칙 (자료: 금융위원회)



주요국의 금융거래지표 관리 입법 현황

- EU(및 영국) · 일본 · 호주 · 싱가포르 등이 금융거래지표 관리법을 제정
 - ▶ 국가별로 규제의 범위와 강도에는 차이가 있으나, 공통적으로 **IOSCO 원칙을 구현**

지역	법령	규제 대상 지표	추진 경과
 <p>EU 영국</p>	영국*과 EU는 별도로 입법을 추진하였으나, EU 벤치마크법(BMR)으로 통합	지표금리를 중요도에 따라 구분 (Critical · Significant · Non-significant) ▶ 차별적으로 규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16.4월 입법 • '18.1월부터 시행 중
* 영국은 '15.4월에 개정된 금융서비스시장법(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)에 벤치마크 규정을 신설 ▶ '18.2월에 동법 개정을 통해 EU 벤치마크법을 통합 · 반영			
 <p>일본</p>	(2014년 개정) 금융상품거래법에 금융거래지표 관련 조항 추가 (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)	총리가 지정하는 특정금융지표 (specified financial indicator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14년 금융상품거래법 개정 • '15년 시행
 <p>호주</p>	(2017년 개정) 기업법에 금융거래지표 관리 규정 신설 (Corporations Act)	증권투자위원회(ASIC)가 지정하는 중요금융지표 (significant financial benchmark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18. 3월 기업법 개정안 의회 승인 • 후속입법 중 (하위규정)
 <p>싱가포르</p>	(2017년 개정) 증권선물법에 금융거래지표 규제 신설 (Securities and Futures Act)	정부(MAS)가 지정한 중요지표 (designated benchmark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17.1월 증권선물법 개정 • 후속입법 중 (하위규정)
 <p>캐나다</p>	2016년부터 제정을 추진 중인 자본시장안정법(Capital Markets Stability Act)에서 정부가 지정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거래지표를 규제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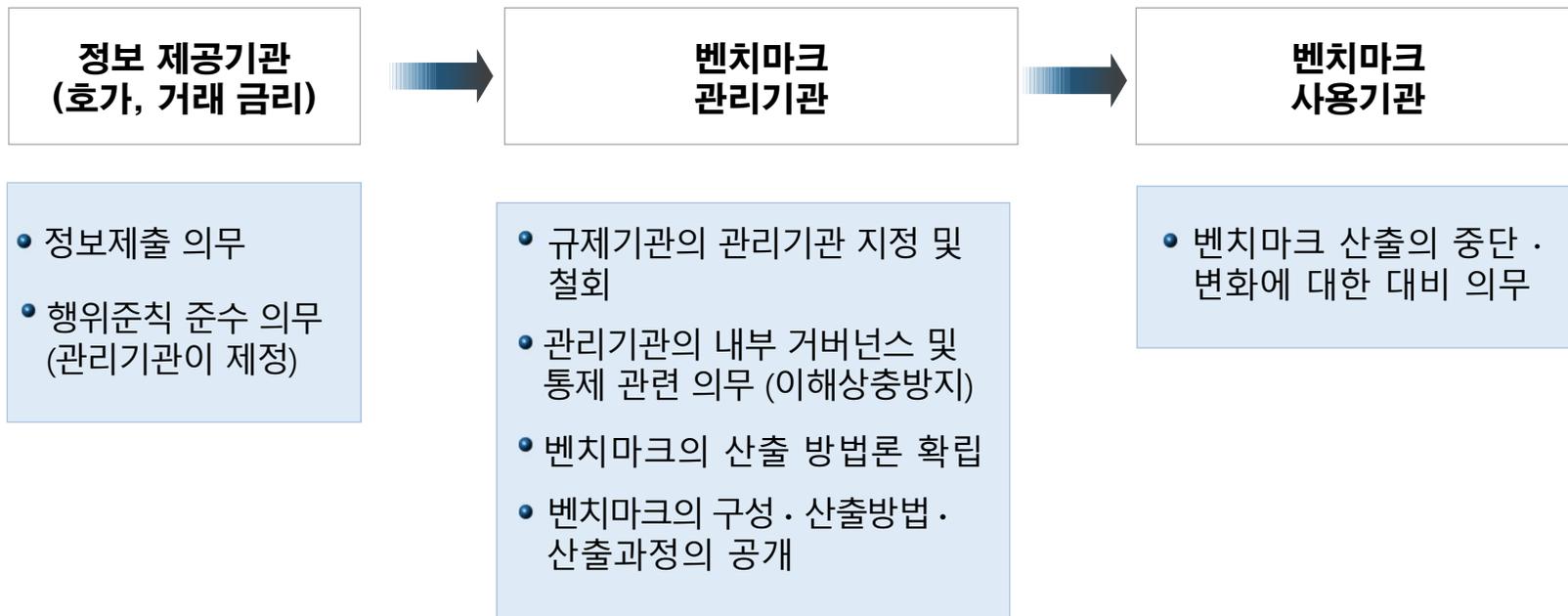
해외 금융거래지표법의 주요 내용: EU BMR을 중심으로 (1)

- (약칭) EU 벤치마크법(Benchmarks Regulation: BMR)에서는 '금융거래지표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*'을 규율 ➔ 주요국 중 IOSCO 원칙을 가장 구체적으로 법제화

* 금융거래지표 관련 활동: 지표의 산출을 위한 정보(호가 등) 제공, 지표의 산출·관리·공시, 지표의 사용

- 벤치마크의 구분: 핵심(critical) · 중요(significant) · 기타(non-significant) 벤치마크

EU 벤치마크법 체계



해외 금융거래지표법의 주요 내용: EU BMR을 중심으로 (2)

○ 핵심 벤치마크의 선정

- ▶ 벤치마크와 연관된 금융상품 · 금융계약 · 성과평가 대상 투자펀드의 규모(연관 경제규모)가 5천억 유로 이상
- ▶ **연관 경제규모에 관계없이 규제당국이 핵심 벤치마크로 지정 가능 (일본 · 호주 · 싱가포르 등도 동일 규정 도입)**
- ▶ '해당 벤치마크의 산출이 중단되거나, 해당 벤치마크가 시장 및 경제상황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거나, 신뢰할 수 없는 정보에 기초해 산출될 경우 가계, 기업, 금융기관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 · 금융안정 · 소비자 보호 · 시장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'

○ 정보(호가) 제공자의 의무 (호주 · 싱가포르 · 일본도 유사 규정 도입)

- ▶ **규제기관이 특정 금융기관에게 핵심 벤치마크 산출을 위한 정보제출을 의무화할 권한**
- ▶ **해당 벤치마크의 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정보(호가)를 제공할 의무**
(일본은 벤치마크 관리기관과 정보제공기관간에 체결하는 정보제공계약을 통해 벤치마크 관리기관이 정보제공기관의 의무 준수를 보장하도록 요구)
- ▶ 벤치마크 관리기관이 제정한 행위준칙 준수 의무
- ▶ Input data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**이해상충을 방지**할 수 있는 **내부통제 의무**

해외 금융거래지표법의 주요 내용: EU BMR을 중심으로 (3)

○ 벤치마크 관리자의 의무 (호주 · 일본 · 싱가포르도 유사 규정 도입)

- ▶ 정보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행위준칙 및 벤치마크 관리기관의 자체 행위준칙 제정 의무 (규제당국이 승인, 변경 요청 가능)
- ▶ 벤치마크 산출을 위한 정보(호가, 거래 금리)의 적정성 확보 및 검증, 벤치마크 산출 방법론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, 공시체계의 마련 (규제당국의 승인 필요)
- ▶ (잠재적)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하고 지표산출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할 의무
- ▶ 벤치마크 사용자가 벤치마크의 구성과 산출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문서로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
- ▶ 지표산출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위원회 및 독립적 감사의 설치
- ▶ 벤치마크 관리자에 대한 규제당국의 승인과 철회 (금융기관은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은 벤치마크만 사용가능)
- ▶ 규제당국이 공익을 위해 벤치마크 산출이 지속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, 벤치마크 관리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벤치마크 산출을 강제화 가능
- ▶ (싱가포르) 규제당국이 중요지표의 관리자로 인증을 받은 벤치마크 관리기관의 CEO 및 이사 변경을 승인할 권한

해외 금융거래지표법의 주요 내용: EU BMR을 중심으로 (4)

○ 벤치마크 사용자의 의무 (IOSCO 원칙 반영)

- › 벤치마크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**벤치마크 산출의 중단에 대비할 수 있는 문서화된 계획**을 보유 ▶ 규제당국이 해당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권한

○ 규제당국의 역할 (호주 · 일본 · 싱가포르도 유사 규정 도입)

- › 벤치마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제출 요구, 현장 검증 및 조사, 행위중단 및 가압류 권한
- › 법에서 정한 항목을 위반시, 행위중단 요청 · 부당이익 환수 · 벤치마크 관리기관에 대한 지정승인 철회 · 금전적 징벌 · 행정(관리) 조치

해외 금융거래지표법의 주요 내용: EU BMR을 중심으로 (5)

○ EU · 영국 금융기관의 제3국 벤치마크 사용에 대한 규정

- ▶ EU · 영국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은 '20.1월부터 EU 또는 영국 규제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제3국 벤치마크를 활용한 금융거래와 금융상품 투자가 금지
- ▶ 제3국 벤치마크는 '동등성(equivalence)', '보증(endorsement)', '인증(recognition)'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해 EU · 영국내 사용이 허가

동등성
기준

- 유럽위원회(EC)가 제3국 벤치마크 관리자의 규제당국이 EU 벤치마크법에 상응하는 수준의 법·규제·감독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
- ▶ 동등성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처리가 가능

보증

- EU내 벤치마크 관리자 또는 금융기관이 제3국 벤치마크가 EU 벤치마크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증
- ▶ 제3국 벤치마크와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이 보증기관에 귀속

인증

- 제3국 벤치마크 관리자가 적정 EU회원국 규제당국으로부터 인증을 얻는 방법
- ▶ 해당 벤치마크 관리자가 IOSCO 원칙을 준수하고 EU 벤치마크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제3국 규제당국이 보증할 필요

동등성 및 인증에 의한 승인을 위해서는 제3국도 자체 금융거래지표법이 반드시 필요

3

국내 정책방향

국내 정책방향

- 국내에서도 '① 금융거래지표의 안정성과 신뢰도 향상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· 금융안정 제고, ② 국제 정합성 확보, ③ EU · 영국 벤치마크법 대응' 등을 위해 **금융거래지표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**
 - ▶ 금융거래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지표금리에 대한 규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표금리 산출 중단 등에 따른 시장 혼란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
 - ▶ EU · 영국 벤치마크법의 제3국 벤치마크 규제에 대한 대응에도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공적 규율 기반이 반드시 필요
 - ▶ 향후 타 지역에서도 자국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3국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승인 추세가 확산될 가능성
 - ▶ 국내 주요 금융거래지표 관리기관 또한 IOSCO 원칙에 입각해 지표가 산출 · 관리될 수 있도록 내부 제도 · 절차 등을 재정비할 필요
- 장기적으로 국내에서도 CD금리와 같이 유동성이 저조한 금융거래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지표금리 개발을 고려할 필요
 - ▶ 대체지표금리의 개발과 적용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
 - ▶ 해외에서도 FSB의 주도하에 대체지표금리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



감사합니다.